

농업유전자원법의 제정필요성에 관한 검토



오 윤 석

법학박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I. 서 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식물, 동물 및 미생물 등 다양한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¹⁾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 자원은 인류의 다양한 수요와 생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재료이다. 인류는 그 동안 이러한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명을 건설하였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왔다. 그러

1)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이라 함은 인류를 위하여 실제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또는 그 부분, 개체군 또는 생태계의 그 밖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나 생물자원에 대한 가치와 존재에 대하여 그 동안의 인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저 당연히 자연에 존재하고 있는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오면서 생물학과 생명공학(Biotechnology)²⁾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생물자원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인류는 유전자원을 포함한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오늘날에 있어서 생명공학은 국가의 경제발전과 경쟁력을 견인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들은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이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에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생물자원과 석유와 같은 지하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부존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하여 인간의 창의성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의 개발에 의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은 생물자원에 대한 무한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현재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생물자원 분야에서 수많은 투자와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종자전쟁’ (seed war), ‘유전자원 전쟁’ (genetic resources war) 및 ‘생물자원전쟁’ (biological resources war)으로 표현되고 있다.³⁾

생물자원 중에서 식물유전자원(plant genetic resources: PGR)은 인류의 식량문제⁴⁾와 의약품의 개발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재료로 인식되고

2) “생명공학”(biotechnology)이라 함은 특정용도를 위하여 제품이나 제조공정을 개발하거나 변형시키기 위하여 생물계·생물체 또는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응용을 말한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3) 종자전쟁(seed war)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Lara E. Ewens, “SEED WARS: BIO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QUEST FOR HIGH YIELD SEEDS”, (http://www.bc.edu/bc_org/avp/law/lwsch/journals/bciclr/23_2/05_TXT.htm) 참조.

4) 인구문제와 식량문제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면,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의 인구는 1997년 현재 5억 5천 만명에서 2005년에는 12억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도상국의 영양부족 인구통계 (<http://www.hunger.or.kr/gia/hot/ungernourishmentl.xls>); 1998년 식량농업기구에서 채택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세계적 상황(The State of the World's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상의 약 8억의 인구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 5세 미만의 2억의 어린이가 저 체중 상태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The Report on the State of the World's Plant

있다. 그러나 식물유전자원의 이용과 개발에는 재료가 되는 유전자원과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중요한 요소인데, 이들은 각각 지구의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과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국에 편재되어 있는 지리적인 양극화라는 특징이 있다. 국제사회는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의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하여 국제연합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⁵⁾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⁶⁾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⁷⁾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⁸⁾와 같은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서 논의를 진행해왔었고,⁹⁾ 현재에

Genetic Resources. 이재근·최승환·오윤석, 『농업유전자원 관련 국내외 규정연구』, 농림부(미발행 연구보고서), 2006.

- 5) 국제연합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이용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을 채택하였고,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결과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본 지침(Bonn Guidelines)과 같은 국제적 문서를 만들었다.
- 6)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는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지침(International Undertaking on Plant Genetic Resources),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지구행동계획(Global Plan of Ac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유전물질의 수집 및 이전을 위한 행위규칙(Code of Conduct for Germplasm Collecting and Transfer), 유전자은행기준(Genebank Standard), 생명공학행위규칙(Code of Conduct on Biotechnology), 종자은행네트워크(Network of Ex Situ Collections),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정보 및 조기경보체계(World Information and Early Warning System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곡물관련네트워크(Crop-Related Network), 산림원칙선언(Non-legally binding authoritative statement of Principle for a global consensus on the managemen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ll types of forests),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과 같은 국제적 문서와 체제를 만들었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규범』,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2004.
- 7)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경우 ‘지적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속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IGC)에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wipo.int/tk/en/igc/>) 참조.
- 8) 세계무역기구의 경우 각료회의의 의제나 무역관련지적재산권위원회(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ncil: TRIPs Council)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wto.org>) 참조.
- 9)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국제연합의 여러 전문기구가 있고, 관련 국제회의로는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와 세계무역기구의 각료회의(Ministry Conference),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회의(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P/CBD)를 포함한 여러 가지 회의를 들 수 있다. 오윤석, “국제법상 식물유전자원

도 이러한 논의는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가들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차이는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¹⁰⁾ 그런 가운데 식량농업기구의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지침(International Understanding on Plant Genetic Resources: IU)¹¹⁾과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¹²⁾의 채택과 국제연합환경계획의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¹³⁾과 같은 국제조약을 통하여 일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 내었다. 한편 개별 국가들도 식물유전자원의 확보와 이용을 위하여 국내법을 제정하는 등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¹⁴⁾

지리적으로 지구상의 북반구의 온대지역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에 비하여 생물다양성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 절대적인 양은 매우 부족하여 해외로부터의 자원도입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심하다.¹⁵⁾ 그래서 정부에서는 식물

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10) 이러한 문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채택과정이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의 채택과정에서도 국가들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연구원,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해설서』, 국립환경연구원, 1995.
- 11) 1983년 식량농업기구에서 채택된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지침(International Undertaking)은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문제와 이익공유를 다룬 최초의 국제적 문서이다. 그러나 동 문서는 국가들을 구속하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적인 문서에 불과하다. 2002년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의 채택 이후 동 지침의 존속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이나 국제조약의 채택으로 동 지침의 실질적인 기능은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 12) 2002년 채택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은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과 조화하여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다자체제(Multilateral System)를 설립하였다.
- 13)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전자원을 포함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그 이용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의 형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1992년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되었다. 동 협약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를 다루기 위하여 지적재산권문제를 포함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 14) 국가적인 입법의 경우 농업유전자원에 대하여만 별도의 입법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그러나 유전자원보유국들을 중심으로 자국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국내법을 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코스타리카, 필리핀, 인도, 중국, 안데안공동체(Andean Community) 등을 들 수 있다.
- 15)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유전자원의 수는 약 10만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진행된 것은 없으므로 단순히 추정치에 불과하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존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수는 종자은행에서 보존하고 있는 151,082점 등을 포함하여 총 3,715종 216,270점이다. 이 중에서 식물유전자원은 1,165작목 1,777종 149,742점으로 미국(461,000점), 중국(358,000점), 러

유전자원의 안전한 확보와 이용을 목적으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먼저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보존,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법을 제정하고자 현재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 있다.¹⁶⁾

본 논문은 현재 농림부공고(2006-195호)로 입법 예고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및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그 법률안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의 제정필요성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자 한다.¹⁷⁾

II. 농업유전자원법의 제정배경

1. 유전자원에 대한 국내의 현황

유전자원의 가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종교적 및 정서적으로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는데,¹⁸⁾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아(349,000점), 일본(208,000점), 인도(275,000점) 등 식물유전자원의 보존에 있어서 양적으로 세계 6위권에 있으나 유전자원의 상당량을 외국으로부터의 도입(약 70% 정도의 의존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곤·최승환·오윤석, 『농업유전자원 관련 국내외 규정 연구』, 농림부, 2006, 242 면.

16) 입법 예고된 법안의 정식명칭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유전자원법안’이라 함)로 2006년 10월 27일 농림부공고 제2006-195호로 공표되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 참조. 동 법률안의 명칭은 현재 정부d의 입법준비작업을 거치는 동안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부 명칭이 변경되었고,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에 있고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 있다. 한편, 동 법률안과는 별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전자원을 규율하고 있는 법규는 농림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16개의 법률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유전자원을 규율하는 법규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예산의 중복집행과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법령정비가 필요하다. 본 법안의 입법취지도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

17) 농업유전자원법안의 제정에 대한 그 동안의 작업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각종의 국제조약의 채택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원칙이 선언되면서 국가들은 특히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자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의 재래종 유전자원인 콩이나 라일락이 미국으로 유출되었다는 보도와 함께 유전자원의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일었고, 이에 정부는 이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김우남 의원 등이 발의한 의안과 정부에서 제안한 두 개의 법률안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는 의원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의 통합작업 및 수정안이 마련되어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법률로 제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 생물다양성협약은 전문에서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가치를 생태학적, 유전학적, 사회적·경제적,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 휴양적 및 미학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전문, para. 2. 이와 같이 생물

부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업분야와 의약분야이다. 유전자원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확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것이다. 즉 국내에 있는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보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외로부터의 농업유전자원의 다양한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¹⁹⁾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국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기업, 민간부문 등에서 분야에 따른 다양한 유전자원을 보존, 관리 및 이용을 하고 있다.²⁰⁾ 그러나 유전자원의 이러한 보존, 관리 및 이용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통일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2. 현행 유전자원관리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간단히 지적하면 다

다양성을 포함한 생물자원의 가치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다.

- 19) 2007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존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수는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의 종자은행에서 보존하고 있는 식물종자 153,306점을 포함하여 총 3,715종 220,923점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 관리자 협의자료』,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2007.
- 20) 국내에서 유전자원을 보존 및 관리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은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유전자원센터,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의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산림청의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수목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의 생물다양성부 및 국립생물자원관, 기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이들 기관은 자기의 해당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유전자원을 규율하고 있는 국내법규로는 첫째, 농림부가 주관하고 있는 8개의 법률(농업·농촌기본법, 종자산업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법, 식물방역법, 산림법, 산림기본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18개의 고시, 훈령 및 지침(농업유전자원관리규칙, 농업유전자원관리요령,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지정 및 운영요령, 농업유전자원 국외분양검토위원회운영지침, 농업식물유전자원등록 및 폐기검토위원회운영지침, 농업유전자원분양규정, 한국농용미생물 보존센터 미생물유전자원분양판매회,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환경위해성 평가심사지침, 동물유전자원관리규정,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규칙, 자연휴양림조성·관리 및 운영요령,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관리요령, 보안림관리요령, 종묘사업실시요령,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채종원운영관리규정, 시험림운영관리규정, 산림미생물자원관리규정) 등이 있고, 둘째,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는 5개의 법률(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자연공원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습지보전법) 등이 있고, 셋째, 과학기술부가 주관하고 있는 생명공학육성법이 있고, 기타 문화재청이 주관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등이 있다.

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유전자원에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가 종합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관련 법률이 존재하고, 여러 부처에 업무가 산재되어 있어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문제가 지적된다.²¹⁾ 둘째, 유전자원 관련 시설 및 인력의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에는 시설과 인력이 필수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결과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유전자원 관련 국제기구와 유전자원보유국 등과의 국제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전자원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원의 지속적 도입을 위하여는 관련 국제기구와 유전자원보유국들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농업유전자원법안의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다.²²⁾ 넷째, 유전자원 관련 보존기술의 미비를 지적할 수 있다. 유전자원의 보존에 있어서 보존기술의 수준은 보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 종자은행의 확충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고, 민간의 보존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²³⁾ 다섯째, 유전자원의 증식 및 채종기술의 미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수집된 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증식과 채종기술의 발전이 절실한데, 이 점은 전문인력의 양성과 시설의 확충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참고로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이와 관련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을 규정하고 있다.²⁴⁾

21) 현재 유전자원과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다양하지만 특히 농업유전자원을 규율하고 있는 법규는 종자산업법 제165조에 의하여 마련된 농업유전자원관리규칙(농림부령 제1446호)이다. 종자산업법 제165조는 ① 농업유전자원의 수집·평가·보존·관리, ②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확보와 활용도 증진을 위한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및 등록, ③ 농업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등급구분 및 분양, ④ 기타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유전자원관리규칙은 농업유전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의 지정,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및 평가, 보존, 등급, 분양 및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보존과 이용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부령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산문제이다.

22) 법률안 제6조제2항.

23) 2006년 11월 3일 정부는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산하에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National Agrobiodiversity Center)를 건립하였다. 동 센터는 ① 유전자원의 탐색, 분류, 수집, 보존, 특성평가 및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② 유전자원의 활력검정, 증식, 분양 및 관련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③ 유전자원에 관한 정보의 전산화 및 관리, ④ 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 ⑤ 유전자원 국가관리체계 확립을 그 임무로 하고 있으며, 50만점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춘 저장시설을 갖고 있다. 자세한 설명은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홈페이지(<http://genebank.rda.go.kr/>) 참조.

24) 법률안 제12조제2항.

여섯째, 유전자원의 수집 및 이용체계에 있어서 산·학·연간의 공동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현재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은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 유전자원의 보존, 관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들 상호간에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존하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나 실태파악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출연기관 및 민간분야와의 연계작업이 필요하다. 일곱째, 유전자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미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유전자원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수집된 유전자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여덟째, 유전자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는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것은 국제 협력을 통하여 특히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기구나 자원보유국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아홉째, 유전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구축 등 정보화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 이용을 위하여는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농업유전자원법안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²⁵⁾ 열째, 유전자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중앙 집중적인 대표적인 국가기관이 있어야 한다. 여러 곳에 산재된 유전자원에 대한 분산된 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대표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인위적인 집중이 아닌 각 기관의 특성과 소관 분야의 업무를 해치지 않는 집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법률과 정책의 다양한 존재로 인하여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작업을 수행하고 관련 정책과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농업유전자원법안은 농업유전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국가 자산으로써 안전하게 보존, 관리 및 이용함으로써 농업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유전자원을 생명산업의 소재로 활용하여 농업의 경쟁력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25) 법률안 제12조제1항.

Ⅲ. 농업유전자원법안의 구성과 주요내용

1. 농업유전자원법안의 구성

2006년 10월 27일 농림부공고 제2006-195호로 농림부에서 입법 예고되고 공개된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총 6장 2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⁶⁾ 제1장은 총칙으로 법의 목적, 정의,²⁷⁾ 기본원칙, 국가 등의 책무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 등으로 농업유전자원의 조사·목록화 및 등재, 평가 및 등급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분양승인, 분양승인의 제한 및 취소, 국외반출제한, 농업유전자원의 정보화, 전문인력의 육성과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및 이용촉진을 규정하고 있고, 제3장은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안전보존을 위한 특별조치로 위험에 대한 대응, 재난 또는 위난시의 대응을 규정하고 있고, 제4장은 농업유전자원위원회 등으로 농업유전자원위원회,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의 지정,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고, 제5장은 보칙으로서 권한의 위임과 위탁을 규정하고 있고, 제6장은 벌칙으로 불법접근과 국외반출에 대한 처벌, 양벌규정, 과태료와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칙은 법률의 시행일, 법률의 제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과 경과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²⁸⁾

26) 한편 국회에 제안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총 5장 20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 계류법안 참조.

27) 용어에 대한 정의로 농업, 유전물질, 유전자원, 농업유전자원, 야생종, 재래종, 도입종, 육성종(동물의 경우 사육종), 현지 내 보존, 현지 외 보존, 접근, 이용, 사전주주의 원칙 등 13개의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법안 제2조.

28)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 용어의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제2장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등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사·등재 등, 분석·평가 등, 분양승인 등, 분양승인의 취소 등, 국외반출승인 등,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장은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로 농업유전자원 심의위원회,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4장은 보칙으로 권한의 위임·위탁 등, 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고 있고, 제5장은 벌칙 등으로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농업유전자원법안의 주요내용

(1) 법안의 전체 구성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총 6장 24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 등, 제3장은 안전 보존을 위한 특별조치, 제4장은 농업유전자원위원회 등, 제5장은 보칙, 제6장은 벌칙 등이다. 구체적인 조항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2) 총칙

① 목적

농업유전자원법안은 본법의 목적에 대하여 “이 법은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이용함으로써 농업생물다양성의 보존과 농업생명공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⁹⁾ 본 목적조항에 의하면 동 법안은 농업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과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먼저, 보존(conservation)이란 사전적 의미로 잘 지키어 상하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특히 생물자원의 감소나 유전자원의 감소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것을 말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않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수요충족을 위한 잠재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보존의 의미에 지속 가능한 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목적규정은 유전자원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정서적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의 변화와 증가된 중요성에 따라 국제적인 합의로 나타나는 관련 조약의 규

29) 법안 제1조. 한편,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 동 법안의 목적에 대하여 “이 법은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농업생명공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규정으로 평가된다.³⁰⁾ 즉,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확보와 이용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특히 이 법의 목적이 국가의 경쟁력강화와 함께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기여에 있다고 규정한 측면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한 하나의 지향점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¹⁾

본 법률안의 목적 규정 중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이용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관한 목적이 결여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유전자원의 보존과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유인책 중에 하나가 이익공유(sharing of benefit) 조항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이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내용으로 판단된다.

② 농업유전자원의 정의

가. 농업유전자원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제2조에서 본 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먼저,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²⁾ 이에 따라 농업유전자원법에 적용되는 농업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30) 생물다양성협약과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도 이러한 목적을 규정되어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제1조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그 구성요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형평하게 공유할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은 제1조에서 “생물다양성협약에 일치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그 이용결과 발생하는 이익의 형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1) 생물다양성협약(CBD)과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ITPGRFA) 및 유전자원의 이용과 이용결과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에 관한 Bonn지침(Bonn Guidelines)은 목적에 대하여 “생물다양성의 보존,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그 이용결과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형평한 공유”를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법률안의 경우 이러한 조약의 목적과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 Bonn지침 각각 제1조.

3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는 “농업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는 “농작물생산업이란 식량작물생산업, 원예작물생산업, 특용작물생산업, 양장업 및 종자생산업을 말하고, 축산업이란 가축의 사육업, 부화업 및 종축업을 말하고, 임업이란 영임업(자연휴양림의 조성·관리 및 운영업을 포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수산업은 제외된다.³³⁾

또한, 유전물질이라 함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유전자원이라 함은 “인류를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³⁴⁾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이란 유전물질(genetic material) 중에서 인간에게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특히 실용성과 관련되는 용어이다. 한편, 잠재적 가치는 자원 중에서 아직 실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농업유전자원이라 함은 “농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자원으로서 이들의 종자, 영양체, 화분, 세포주, 유전자 및 잠종, 종축, 정액, 버섯종균 등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³⁵⁾ 이러한 농업유전자원에는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야생종, 한 지역에서 재배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 및 풍토에 적응된 재래종,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육성종 또는 사육종 및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육성종 및 사육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도입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유전자원법의 적용을 받는 농업유전자원은 농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가진 유전자원으로써 이들의 종자, 영양체, 화분, 세포주(cell line), 유전자 및 잠종, 종축, 정액, 버섯종균 등으로 그 대상이 한정된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자원이라 함은 인류를 위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33) 수산업의 경우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있다. 수산자원의 경우도 동물, 식물, 미생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근래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해양미생물이다. 해양미생물을 해저의 밑바닥에 집중되어 죽은 물고기 등 많은 물질을 분해한다. 미생물 중에는 석유를 분해하는 미생물도 있다. 이와 같이 해양미생물의 서식환경에서부터 각종 이들의 기능은 산업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들은 이러한 해양자원의 다양한 가치를 위하여 수산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다.

34) 생물다양성협약은 유전물질을 유전적 기능을 가진 유기물의 한 부분이라는 뜻으로 유전기능을 하는 DNA를 포함한 모든 유전적 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유전물질의 예에는 종자, 삽수, 정자 또는 개개의 유기물 등이 포함되며, 또한 식물, 동물, 미생물에서 추출한 염색체, 유전인자, 박테리아 플라스미드와 같은 것과 이러한 것의 일부분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35) 법안 제2조 제4호.

사용되거나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또는 그 부분, 개체군 또는 생태계의 그 밖의 생물적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³⁶⁾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의 경우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이란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실체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식물로부터 유래한 모든 유전물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⁷⁾ 따라서 농업유전자원법안의 경우에도 이러한 국제조약의 정의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용어의 정의규정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농업유전자원법안의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즉, 수산자원은 본 법안의 적용대상인 농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본 법안의 주무부서가 농림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의 주관사무인 수산자원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특히, 일본의 경우는 수산자원을 함께 포괄하여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³⁸⁾ 이러한 문제는 추후의 의견수렴과정이나 또는 법 개정을 통하여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수산자원도 농업의 정의에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가 종합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현지 내 및 현지 외 보존

농업유전자원법안은 “현지 내 보존”이라 함은 농업유전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육성종의 경우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³⁹⁾ 생물다양성협약은 현지 내 보존을 위하여 계약당사국에게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1)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제도 또는 특별조치 필요지역제도의 수립, (2) 생물다양성

36)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

37)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 제2조.

38) 일본의 경우 별도의 독립된 농업유전자원을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나 농림수산성의 종자은행사업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유전자원을 탐색·수집하고, 분류·동정·특성평가를 한 후 이들 자원을 증식·보존하고, 유전자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들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의 종자은행사업은 식물, 동물, 미생물, 수산생물, 임목 등 생물자원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전자원과 관련된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면 일본의 경우처럼 모든 생물자원을 함께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39) 유전자원의 보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보호구역(protected area)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보호구역은 특정 보존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되거나 규제 및 관리되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을 말한다.

을 보존하기 위한 특별조치필요지역의 선정을 위한 지침의 개발, (3)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생물자원의 규제 또는 관리, (4) 생태계 및 자연서식지의 보호와 종의 적정한 개체군의 유지, (5)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촉진, (6) 계획 또는 관리전략의 개발을 통한 악화된 생태계의 복구촉진, (7) 생명공학에 의한 변형생물체의 이용에 대한 규제 및 관리, (8) 외래종의 도입 방지 및 규제, (9)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해 양립가능한 조건의 제공, (10)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 토착민 및 지역사회의 보호, (11)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유지, (12) 부정적 영향의 규제 및 관리, (13)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등이다. 농업유전자원법안의 경우도 생물다양성협약의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외 보존”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이라 함은 유전자원과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존 또는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⁴⁰⁾ 생물다양성협약은 현지 외 보존을 위하여 국가에게 (1) 생물다양성의 원산지국 내에서의 보존조치, (2) 원산지국 내에서의 보존시설의 설립 및 유지, (3) 위협받는 종의 복구와 자연서식지로의 재반입을 위한 조치, (4) 현지 외 보존을 위한 자연서식지로부터의 자원수집의 규제, (5) 개발도상국의 현지 외 보존시설설치 및 관리의 협력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농업유전자원법안의 경우 이러한 작업은 향후 유전자원보유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다. 접근 및 이용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접근”이라 함은 유전자원과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존 또는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용”이라 함은 농업인, 육종가 및 연구자들이 농업유전자원을 사용하여 농업생산, 품종육성 또는 신물질 개발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0) 현지 외 보존(*ex situ* conservation)은 현지 내 보존(*in situ* conservation)을 보완하는 보존조치로 종자은행(genebank), 동물원, 식물원, 수목원, 수족관 등 특성발달과 무관한 지역에서 사육되는 생물자원도 현지 외 보존에 포함된다.

라. 사전주의원칙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사전주의원칙”이라 함은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국가의 식량안보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란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으로서 일반적으로 국가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릴 때 주의를 다하여 환경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과학지식의 한계와 환경오염위험의 심각성이 증대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 사전주의원칙의 내용으로는 (1) 과학적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을 이유로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조치를 연기할 수 없다는 것, (2)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일정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연기할 수 없다는 것, (3) 환경오염은 시기를 놓치는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 등이다.

③ 기본원칙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제3조에서 동 법안의 기본원칙으로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사전주의원칙에 의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⁴¹⁾ 이와 같은 기본원칙은 유전자원을 규율하는 국제조약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이들 국제조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가. 국가주권

농업유전자원법안은 “국가는 농업유전자원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한다”고 규정하여,⁴²⁾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선언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권한이 해당 국가에 있고, 국가는 자국의 영토 및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자원에 대한 정책과 법을 제정할

41) 법안 제3조.

42) 법안 제3조 제2항.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의 명시적 선언은 관련 국제조약에도 규정되어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원칙에 의거하여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⁴³⁾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은 체약당사국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권리를 갖고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을 인정하고 있다.⁴⁴⁾ 따라서 농업유전자원법안에서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의 명시적 규정은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과 일치하고 있으며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사전주의원칙

농업유전자원법안은 “농업유전자원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전주의원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⁵⁾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란 앞서 용어의 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릴 때 주의를 다하여 환경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⁴⁶⁾ 사전주의원칙의 구체적 수행과 관련하여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제3장에서 안전보존을 위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즉, “농림부장관은 농업재해 등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함에는 사전주의원칙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대형공사로 인하여 농업유전자원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 안전한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 내란, 전쟁 등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상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⁴⁷⁾ 이러한 작업은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43) 협약 서문 및 제3조.

44) 동 조약 전문 및 제10조 제1항.

45) 법안 제3조 제1항.

46)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주의원칙과 관련을 갖는 규정을 두고 있는 국제문서로는 유류오염사고 시 공해 상 간섭에 관한 협약 제1조, 제5조 3항 a,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서문, 오존층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서문, 리우선언 원칙 15, 유해폐기물의 국제거래금지협약(바젤협약) 제4조 제3항 f, 기후변화협약 제3조 제3항 등을 들 수 있다.

47) 법안 제16조.

사전주의원칙은 관련 국제조약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즉, 생물다양성협약은 계약당사국에게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와의 기술적 및 과학적 협력을 규정하고 있고,⁴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의 경우 계약당사국들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서 식량농업기구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다른 계약당사국과의 협력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⁴⁹⁾ 따라서 농업유전자원법안의 이 규정은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④ 국가 등의 책무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제4조에서 국가 등의 책무로 첫째, 국가는 농업유전자원의 확보와 안전한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법제상, 재정상 기타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은 주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장기계획으로 통상적으로는 5년을 단위로 설정하여 국가관리체계에 대한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1)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평가, 증식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유전자원의 분양 등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및 (4) 그 밖에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시행계획은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단기계획으로 통상적으로 1년을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세부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노력은 모든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48) 동 조약 제18조.

49) 동 조약 제7조.

⑤ 적용범위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본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이 법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 등을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 등을 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에 따르도록 하지만 전체적인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생물다양성협약은 제15조 제3항에서 “이 협약의 목적상 동조와 제16조 및 제19조에 언급된 체약국이 제공하는 유전자원은 그 자원의 원산국인 체약국 또는 이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체약국이 제공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여 기술이전과 생명공학에 의한 이익에 대한 조항들은 제15조 제3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정의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므로 동 협약이 발효되기 이전부터 유전자은행이나 다른 현지 외 보존시설에서 보존되고 있는 유전자원은 동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⁵⁰⁾ 이 규정에 의하여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분산되고 다중화 된 관리체제를 집중적이고 일원화된 종합적인 체제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쉬움으로 지적될 사항은 농업유전자원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인상을 주어 본법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점이다. 농업유전자원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본법이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기본법이라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① 농업유전자원의 조사, 목록화 및 등재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제6조에서 국내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현

50)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되기 이전에 수집된 유전자원이 생물다양성협약의 적용범위 밖에 있다는 것은 생물다양성협약의 합의문(Agreed Text) 채택을 위한 나이로비(Nairobi)회의의 결의 III(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Agriculture)에서 규정하고 있다. FAO Items 3.1 and 3.2 of the Provisional Agenda, Commission on Plant Genetic Resources,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Undertaking: Mandate, Context, Background and Proposed Process*, Commission on Plant Genetic Resources, 1st Extraordinary Session, Rome, 7-11 Nov. 1994, pp.11-13.

지 내 보존 및 현지 외 보존상태에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고, 이를 목록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유전자원에 대한 수집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에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와 수집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조 제2항은 농림부장관은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재래종, 야생종 등의 농업유전자원과 품종개발 등의 연구에 필요한 유전자원을 동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기관이나 자원보유국 등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이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농림부장관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기관 및 자원보유국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확보할 자원은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재래종, 야생종 등의 농업유전자원과 품종개발 등의 연구에 필요한 유전자원이다.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이러한 노력에 대해 농림부장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 작업은 수집된 국내의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수집되어 보존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수집되고 조사된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목록화가 필요하다. 농업유전자원법안은 국내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현지 내 보존 및 현지 외 보존된 농업유전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할 것을 농림부장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작업의 선결적 사항이 바로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조사, 목록화이다.⁵¹⁾

그 다음으로는 목록화 된 농업유전자원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자원은 유전자원 목록에 등재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농업유전자원법안은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으로 하여금 농업유전자원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목록화 되고 등재된 농업유전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원에 대한 특성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이러한 평가와 등급부여를 역시 규정하고 있다. 분석 및 평가는 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용촉진을 위한 내용 중에는 기존에 이용되는 자원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까지

51) 법안 제6조.

이용되지 않았던 미 이용중에 대한 이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의 보존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들에 대한 분석 및 평가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작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유전자원법안의 이러한 조항은 아주 타당한 규정이라 생각된다.

②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제8조에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보존과 관리는 현지 내 보존⁵²⁾과 현지 외 보존⁵³⁾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보존은 현지 내 보존이지만, 현지 내 보존이 어렵거나 또는 자원을 외국의 도입중에 의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현지 외 보존이 중요하다. 따라서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현지 내 보존자원으로 파악된 개체군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여 한다.⁵⁴⁾ 둘째, 현지 외 보존자원을 수집, 평가 및 등급화를 실시하여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⁵⁵⁾ 셋째,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들과 교류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하여 다른 국가와 관력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⁵⁶⁾ 국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으로는 먼저 국제기관으로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GIAR)⁵⁷⁾ 산하의 다양한 국

52) 현지 내 보존 (*in situ* conservation)이란 농업유전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육성종의 경우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53) 현지 외 보존(*ex situ* conservation)이란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54) 식량농업기구의 지구행동계획(Global Plan of Action)은 유전자원의 현지 내 보존 및 개발사업을 위하여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을 조사하여 목록화하고, 지역 재래종의 조사 및 농부공동체를 포함하는 현지 내 보존관리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지구행동계획의 우선행동계획 1-4.

55) 지구행동계획은 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존을 위하여 국가별 및 국제기구의 종자은행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행동계획 5-8.

56) 법안 제8조.

57)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GIAR)은 16개의 국제농업연구센터(IARCs)의 활동을 조정하고 식량농업기구의 지구체계를 감독하기 위하여 식량농업기구, 세계은행(World Bank)과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 의하여 1971년 워싱턴의 세계은행 본부 내부에 설립되었다. 식량농업기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독립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농업연구센터(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Centres: IARCs)⁵⁸⁾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의 당사국회의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TPGRFA)의 운영기구 등 관련 조약의 국제기구도 포함된다. 외국의 경우는 자원보유국으로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을 포함한다. 선진국의 경우 현지 외 보존자원에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현지 내 보존자원에 맞추어 자원확보를 위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협력의 방법으로는 자원에 대한 탐색, 수집 및 공동연구개발, 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자원보유국인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나라의 향후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의 국제조약의 가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또한 농림부장관은 재래종 등을 농가에서 재배하여 보존·관리함으로써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다양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수화를 위한 획일적 품종의 재배로 많은 품종이 멸종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성의 증대를 위한 방편으로 재래종 또는 토착종을 재배하여 보존·관리하는 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8) 국제농업연구센터(IARCs)는 국제열대농업연구센터(Centro Internacional de Agricultura Tropical: CIAT), 국제산림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CIFOR), 국제옥수수밀개량연구센터(Centro Internacional de Mejoramiento de Maiz y Trigo: CIMMYT), 국제감자연구센터(Centro Internacional de la Papa: CIP), 국제건조지역농업연구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the Dry Areas: ICARDA), 국제임업연구소(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Agroforestry: ICRAF), 국제수중생물자원연구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Living Aquatic Resources Management: ICLARM), 국제식량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 국제열대농업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Tropical Agriculture: IITA), 국제생물자원연구소(Inter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ILRI), 국제식물유전자원연구소(International Plant Genetic Resources Institute: IPGRI), 국제미작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RRI), 국제국가농업연구지원기관(International Service for 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ISNAR), 국제수역경영연구소(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IWMI), 서부아프리카미작개발협회(West Africa Rice Development Association: WARDA) 등이 있다.

③ 분양승인 및 승인의 제한, 취소, 국외반출제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의 목적은 그 자원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집되어 보존되고 있는 자원의 이용⁵⁹⁾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농업유전자원법안은 농업유전자원의 이용(분양)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 즉,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보존되어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⁶⁰⁾ 또한 협약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집된 자원은 협약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법안 제8조의 분양승인 규정은 국내분양과 국외분양을 포괄하여 함께 규정하고 있다. 현행의 농업유전자원관리규칙은 분양승인에 대하여 등급구분에 의한 분양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내의 재래종 등은 1등급으로 규정하여 일정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도입종은 2등급으로 규정하여 신고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농업유전자원법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을 다루는 규정을 세분화하고 있지 못한데서 연유한다. 그러나 동 법안이 제정되고 나면 시행령에서 분양과 관련된 내용을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이 농업유전자원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기관(제공자)과 분양받는 자(수령자) 사이에 체결하는 분양계약서(물질이전협정, 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참고로 2006년 6월 16일 식량농업기구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ITPGRFA)의 운영기구는 결의 1/2006을 통하여 표준물질이전협정(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SMTA)을 채택하였다. 운영기구에 의해 채택된 표준물질이전협정은 전문, 10개 조항,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목적(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다자체제 내에서 자원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물질이전협정을 채택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1조는 협정의 당사자(제공자와 수령자)를

59) 이용이라 함은 농업인, 육종가 및 연구자들이 농업유전자원을 사용하여 농업생산, 품종육성 또는 신물질 개발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법안 제2조.

60) 법안의 시행령이 마련되는 경우 분양승인에 대한 조건이 규정될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조건은 이용의 목적, 이용결과 발생이익의 분배 등이다. 특히 관련 지적재산권문제에 대한 규정이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물질이전협정(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 또는 분양계약서이다.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정의(제한없이 이용 가능한, 유전물질, 운영기구, 다자체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개발 중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제품, 매출, 상업화를 위하여)를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물질이전협정의 대상(부속서 1에 기재된 자원과 관련 정보)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일반규정(협정의 체결과 이행, 법적 조치와 절차의 준수, 제3의 수익당사자, 제3의 수익당사자의 권리)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접근의 부여, 정보제공, 개발 중인 물질, 지적재산권 존중, 운영기구에 대한 통보)를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수령자의 권리와 의무(연구·육종·훈련 목적의 이용, 지적재산권 주장불가, 수령된 물질을 다자체제에 이용 가능하도록,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개발 중인 물질의 이전, 금전적 고려와 같은 부가조건의 첨부, 상업화 된 제품에 대한 지불, 다자체제 내의 장치에 대한 자발적 지불, 비금전적 이익을 다자체제를 통해 공유, 획득한 지적재산권의 이전, 지불을 위한 방법)를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준거법(법의 일반원칙, 조약의 목적과 관련 조항, 운영기구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분쟁해결(분쟁의 개시권자, 제3의 수익당사자, 제3의 수익당사자의 정보요구권, 분쟁해결 방법-교섭, 중개, 중재재판)을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부가항목(보증, 협정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서명 및 수락(서명, 쉬링크랩(shrink-wrap) 표준물질이전협정,⁶¹⁾ 클릭랩(click-wrap) 표준물질이전협정⁶²⁾)을 규정하고 있고, 부속서 1은 제공물질의 목록을 규정하고 있고, 부속서 2는 본 협정 제6조 제7항의 지불비율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부속서 3은 제6조 제11항의 선택적 지불의 기간과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고, 부속서 4는 작물에 근거한 지불의 선택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⁶³⁾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마련된 표준물질이전협정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동 국제조약에 가입하는 경우 동 물질이전협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업유전자원법안의 경우도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61) 쉬링크랩(shrink-wrap) 표준물질이전협정은 물질의 포장을 포함하는 표준물질이전협정의 복사본으로 물질에 대한 수령자의 수락은 표준물질이전협정의 조건의 수락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물질이전협정 각주 2.

62) 클릭랩(click-wrap) 표준물질이전협정은 인터넷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웹사이트 또는 적절한 표준 물질이전협정의 전자적 버전에서 적당한 아이콘을 클릭하여 수령자가 표준물질이전협정의 조건을 수락하는 것이다. 표준물질이전협정 각주 3.

63) 표준물질이전협정의 자세한 내용은 (<http://www.warda.cgiar.org/warda/SMTA.pdf>) 참조.

한편, 분양승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이 분양승인의 제한사유이다. 농업유전 자원법안은 분양승인이 제한될 수 있는 사유를 (1) 시험·연구목적 이외의 이용, (2) 보존 농업유전자원이 부족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외반출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 국외분양 시 국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양승인을 농림부장관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⁴⁾ 또한 농림부장관은 분양승인을 한 경우라도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용도와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분양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⁶⁵⁾ 그러나 국회에 제안된 법률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양승인의 취소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여 분양승인이 취소된 자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⁶⁶⁾ 그러나 이 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분양승인이 이루어지고 난 후 분양목적에 위배되게 이용하는 경우 분양승인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분양된 자원의 회수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가 보존하고 있는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제11조에서 현지 내 보존 및 현지 외 보존된 농업유전자원에 접근하여 국외 반출하는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⁶⁷⁾ 이러한 규정은 국내에서 보존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국외유출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차단하여 소중한 우리의 자원주권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④ 농업유전자원의 정보화

유전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특성평가가 완료된 유전자원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자원활용체계와 정보화가 필요하다. 종자은행이 설립되면서 유전자원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평가된 특성의 전산화 정보는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자

64) 법안 제9조 제1항.

65) 법안 제10조.

66) 동 법률안 제9조.

67) 법안 제11조. 한편,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 제21조.

료가 된다. 따라서 종자은행 등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보존현황, 이동경로,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원의 내용, 외국 종자은행 관련 정보의 중개와 유전자원의 목록 등 유전자원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보화 체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⁶⁸⁾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정보시스템구축이다. 즉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등록, 증식, 평가, 보존,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화함으로써 보존의 효율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요건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육성이다.

농업유전자원법안은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관리·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구축 등 정보화작업을 위하여 (1) 농업유전자원의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2) 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3) 기타 관련 정보화사업 등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⁶⁹⁾ 즉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정보처리의 표준화 및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전문인력의 육성, 다양성 및 이용촉진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이용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⁷⁰⁾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인력의 부족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이에 농업유전자원법안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⁷¹⁾

또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에 필수적인 것이 다양한 자원의 보존이다.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재래종⁷²⁾ 등을 농가에서 재배하여 보존·관리함으로써 농업유전자원의

68) 이두순 외, 『식물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75-76쪽.

69) 법안 제12조.

70) 주요한 전문인력으로는 농학, 생물학, 미생물학, 동물학, 분류학 등 자연과학분야의 전문가를 들 수 있지만, 그 외에 인류학, 지리학,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법학, 국제법 등의 사회과학분야의 전문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적인 수준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으로는 농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 환경영향평가전문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취급자, 보호지역관리자, 현지 외 보존시설 기술자 등이다.

71) 법안 제13조.

72) 재래종이라 함은 한 지역에서 재배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풍토에 적

다양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농업유전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원의 절대량 부족한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다양성면에서는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획일화된 단일작물의 재배로 인하여 많은 작물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의 시책에는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농가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보존 주체들에 대한 법적,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이 포함될 것이다.

(4) 안전보존을 위한 특별조치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제15조에서 안전보존을 위한 특별조치로 위험에 대한 대응을 규정하고 있다. 즉,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 등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농림부장관은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함에 있어 사전주의원칙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현지 내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형공사 등 안전한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농업유전자원법안 제16조는 재해 또는 위난시의 대응으로 농림부장관은 자연재해, 내란, 전쟁 등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상회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러한 작업의 이행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 법인 및 자연인 간의 위험의 고지 및 대응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으로서 환경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력원칙은 일반적 협력의무, 국제법 발전을 위한 협력, 긴급상황에서의 협력(고지의무, 지원의무), 절차적 협력(정보제공,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은 제5조(협력), 제7조(확인 및 감시), 제14조(영향평가 및 부정적

응된 종을 말한다. 법안 제2조.

영향의 최소화)를 규정하고 있고,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은 제12조제6항, 제15조제1항 g(사무국장의 지원), 제17조(지구정보체계, 조기경보) 등에서 이러한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유전자원법안의 이러한 규정은 타당하고 필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5) 농업유전자원위원회 등

① 농업유전자원위원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유전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관련 기관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제17조에서 이와 같은 기관으로 농업유전자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업유전자원위원회⁷³⁾는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농림부장관 산하에 설치하고, 동 위원회는 (1)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2) 농업유전자원 분야 연구, 기술 및 인력개발에 관한 사항, (3)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분양, (4)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⁷⁴⁾ 또한 농업유전자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⁷⁵⁾ 농업유전자원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국가계획의 목적은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유전자원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유전자원의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식량안보·지속적 농업·농업생물다양성의 유지·자원도입의 활성화 및 국내자원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유전자원 관련 국가활동을 조정하고,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협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업유전자원의 종합적인 관리기구인 농업유전자원위원회

73) 농업유전자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종사하는 농업유전자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74) 법안 제17조.

75) 한편 국회에 제출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동 기구를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의 업무에 자문하고 보조하는 기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기구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의 설립은 현행의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②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⁷⁶⁾

농업유전자원위원회에 의하여 확립된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주요 정책에 따라서 농업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유전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는 분야별 책임기관이 필요하다.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제18조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농업유전자원법안은 농업유전자원의 확보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관리,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을 지정하는데, 동 책임기관은 (1)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 이용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3) 농업유전자원의 중·장기 보존연구 관한 사항, (4) 기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⁷⁷⁾ 이와 같은 작업은 농업유전자원법안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법률안의 집행에 있어서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농업유전자원은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이들 자원들은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학문,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분야별 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책임기관이

76) 본 법률안의 수행에 주요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농림부장관이다.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농업유전자원의 현황조사 및 수집, 해외에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기관 또는 외국과의 협력체계 구축, 농업유전자원의 목록작성, 등재, 분석 및 평가, 등급구분, 분양승인, 분양승인의 취소, 국외반출승인, 국외반출승인 취소, 농업유전자원의 정보화, 전문인력의 육성, 위험에 대한 대응 및 법률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모든 부분을 농림부장관이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을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의 장에게 상당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률안의 이행에 있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기관은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즉, 책임기관의 장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77) 농업유전자원법안에 의하여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농촌진흥청 산하의 소속기관과 산림청 산하의 소속기관 등이 될 것이다.

필요한데, 농업유전자원의 이 규정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

현실적으로 농업유전자원을 보존하는 기관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이나 개인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즉, 정부기관, 정부출연기관, 연구소, 대학, 기업, 개인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개별적으로 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이들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유전자원을 현실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기관들을 종합적인 관리체제로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의 지정이다.⁷⁸⁾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제19조에서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의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농림부장관은 식물, 동물, 미생물 등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야별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단기보존 및 특성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농업유전자원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⁷⁹⁾ 또한 농림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일정한 경우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률에 규정된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등이다.

농업유전자원의 이용인 분야는 주로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이나 농업유전자원관리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농업유전자원의 국가적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의 지정이나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시행령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78) 농업유전자원관리규칙에 의하여 현재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27개 기관이다. 이 중 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원을 포함하여 15개 기관 45개 과 및 시험장이 있고, 민간기관은 목원대학교 미생물생태자원연구소를 포함한 12개 기관 17개 연구실이 있다. 이들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은 식물영양체, 종자, 미생물 등을 관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 지정현황” 참조.

79)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으로는 개별적으로 농업유전자원을 보존 및 관리하고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국·공립교육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사립교육연구기관, 법인·단체 및 개인 등이다.

(6) 벌칙

농업유전자원법안은 그 제정목적은 제1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농업유전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국가자산으로써 안전하게 보존, 관리 및 이용함으로써 농업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농업유전자원이 농업생명산업의 소재로 활용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 법률안에 규정된 내용이 잘 지켜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법률안은 법률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농림부에서 공고된 법률안은 제21조에서 국외반출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국내농업유전자원에 불법으로 접근하여 국외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제18조에서 국외반출승인규정을 위반하여 국내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농업유전자원을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7조에서는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에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벌칙적용시 공무원의제조항을 두고 있다. 동 조항은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민간부문의 단체나 개인이 본 법률안을 위배했을 때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규정인데, 이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작업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기타 벌칙으로 양벌규정과 과태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법안의 문제점

농업유전자원법안은 농업유전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국가자산으로써 안전하게 관리, 보존 및 이용함으로써 농업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유전자원을 생명산업의 소재로 활용하여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의 확보·수집·목록화·평가·등급화·분양·승인·국외반출제한·정보화 등을 규정하고 있고, 농업유전자원의 국가자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위원회,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 및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 등의 관련기관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고,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 예고된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유전자원법안은 농업유전자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수산자원을 농업유전자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현실적으로 농업유전자원법의 주관부서가 농림부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포함시키지 못한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농업유전자원의 국가적인 관리차원에서 본다면 불완전한 입법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농업유전자원에 관련된 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를 조정하거나 해결할 것이 필요하다. 국회의 법제정 전에 통합이 불가능하다면 법 제정 이후 또는 법 개정 시에 꼭 고려하여야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농업유전자원법안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기여한 농부의 권리(farmers' rights)⁸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육종이나 연구에 있어

80) 농부의 권리는 농업에 있어서 오랜 기간동안 식물유전자원을 보존·관리 및 유지하고 품종을 개량해 온 전통적인 농부들의 기여를 보상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적재산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농부의 권리를 기존의 지적재산권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부여된 권리의 경우 농부의 권리는 보상과 이익공유인 반면, 지적재산권은 배타적 권리이며, 둘째, 권리보유자의 경우 농부의 권리는 농부들의 공동체와 국가(?) 등 일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지적재산권은 자연인과 법인 등 개인이며, 셋째, 주요내용의 경우 농부의 권리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반면에, 지적재산권은 발명, 창작품, 식물품종, 표지, 디자인 등이고, 넷째, 권리의 보호기간의 경우 농부의 권리는 그 기간이 제한이 없는 반면에, 지적재산권은 일정한 제한이 있다. Carlos M. Correa, "Op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Farmers' Rights at the National Level", *Working Paper of South Center*, 2000, pp.15-16; 농부의 권리를 논함에 있어서 주요 요소로 거론되는 것은 ① 식물육종권(plant breeders' rights)과의 균형, ② 농부에 대한 보상(reward to farmers), ③ 식물유전자원과 관련 지식의 보존(conservation of plant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knowledge), ④ 농부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기금(international fund)이다. Regine Andersen, *The History of Farmers' Rights: A Guide to Central Documents and Literature*, Background Study 1, The Fridtjof Nansen Institute(FNI) Report 8, 2005; 한편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은 농부의 권리와 관련하여 ①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련된 농부의 전통지식의 보호, ②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형평하게 참여할 권리, ③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국내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④ 농부들의 식량농업식물

서 농업유전자원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자원은 수 천년 또는 수 만년에 걸쳐 농부들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원을 선별하고 보존하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들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농부의 권리를 정의하고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 그러나 국내의 토착종이나 재래종의 보존을 위하여 국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러한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해당 주체에 대한 지원을 특히 농부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다양한 자원의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 온 농부들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농부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농업유전자원에 관련된 국제기구나 개별국가의 유전자원에 대한 국내법의 경우 농부의 권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⁸¹⁾ 따라서 농업유전자원법안의 경우도 농부의 권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농업유전자원법안은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⁸²⁾의 보호에 대한 규정이 빠져있다. 농업유전자원은 식량부분에 대해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개별적인 농업유전자원의 경우 식물, 동물, 미생물 등 각각의 특성에 따라 의약품 개발 등과 같이 다른 산업에 매우 중요한 재료가 되는 자원이 될 수 있고, 이들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같은 전통지식도 매우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문제의 경우도 과연 농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확정할 것인가

유전자원의 관습적 농업관행에 대한 보호 등을 구체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조약의 계약당사국에 위임하고 있다. 동 조약 제9조.

81) 생물다양성협약의 경우 명시적인 농부의 권리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제8조 (j)에서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적합한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취하여 온 원주민사회 및 현지사회에 대한 이익의 공유”를 규정하고 있고,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의 경우 제9조에서 ‘농부의 권리’(Farmers' Rights)를 규정하여 농부들의 막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국가는 농부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개별국가로는 인도의 경우와 아프리카단결기구의 예를 들 수 있다. 인도는 품종보호와 함께 농부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아프리카의 경우도 농업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해 온 농부들의 기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82) 전통지식이란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지적활동의 산물로서 파생되는 산업, 예술 및 문화 등에 관한 결과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는 전통의약, 전통치료행위, 식품, 농업, 환경 등에 관한 지식과 전통문학, 음악, 미술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파악되는 개념이다.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통의약 관련 전통지식 현황조사 및 지적권 관련 연구』, 특허청, 2002, 1쪽.

의 문제에 연결된다. 그러나 순수한 농업에 관한 측면에 있어서도 전통지식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농업유전자원법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4. 결 어

농업유전자원법안은 다양한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보존하며 지속가능하게 이용하여 농업생물다양성을 유지하여 농업생명공학의 소재로 활용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 다양한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고유한 토착종 및 재래종을 발굴 및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토착재래종의 목록화, 재래종의 특성평가, 재래종 농가보존에 대한 지원, 해외유출 재래종 및 야생종의 재도입, 해외 재래종 및 야생종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전통지식 및 기술의 발굴, 전통지식보존지역 및 보존농가의 지원 및 전통지식의 과학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다섯째,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자산업법을 보완하고, 품종보호에 대한 강화된 권리보호를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야 한다.

농업유전자원법안의 경우 대체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법규정에 포함되지 않았고, 또는 보존과 관리·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이 결여된 것이 아쉬움과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이것은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의 제정이나 법의 개정절차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결 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류의 생존과 다양한 수요의 충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재료인 유전자원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 않고 있다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포함한 다양한 가치가 새롭

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보존하고 이용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국가들은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국제적 합의는 일부 분야에만 이루어져 있고 많은 부분이 미합의 상태에 남아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시기에 우선적으로 농업유전자원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노력은 조금은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적절한 대응조치라 볼 수 있다. 즉 유전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보존, 관리 및 이용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잘 보존된 자원을 미래의 후세세대에게 전해주는 작업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법률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법적 근거 없이 일부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사명감에 의지하여 그것을 지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본다.

국제적으로는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면서 유전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식량농업부문에서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그 이용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의 형평한 공유를 다자체제를 설립하는 식량농업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이 2002년 채택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동 조약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동 조약이 채택되고 조약에 참여한 국가들은 현재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틀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때 그들 국가의 입장을 국제적 틀에 반영하고자 한다. 특히 다자체제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를 다룰 물질이전협정(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의 내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동 조약에 대한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다. 농업유전자원의 제정과 관련하여 이미 조약에 가입된 상태라면 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조약의 내용을 법률제정에 반영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부분도 본법의 제정을 위한 의견개진의 절차나 법의 개정 및 시행령, 시행세칙의 제·개정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이용을 위하여 기본적인 법규를 마련하는 농업유전자원법의 제정에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업유전자원법안은 농업유전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국가자산으로써 안전하게 관리, 보존 및 이용함으로써 농업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유전자원의 생명산업의 소재로 활용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이 가지고 있는 일부 문제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유전자원보호를 위하여 그리고 외국으로부터의 유전자원의 다양하고 안전한 확보를 위하여 법제정을 비롯한 많은 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작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데 농업유전자원법의 제정은 이러한 시대적 필요와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식량농업기구의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조약에 추후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농업유전자원법안은 농부의 권리와 전통지식의 보호에 대한 문제 등을 동 조약과의 일치를 위하여 일부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부 미비한 점이 지적될 수 있는 가운데에도 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국가주권원칙선언과 이익공유규범 등을 포함한 국제적 보호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법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농업유전자원법안의 경우는 국가차원의 유전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규범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의 입법작업이 신속하게 전개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참고문헌

- 국립환경연구원,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해설서』
(IUCN, A Guide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국립환경연구원, 1995.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제4차 식물유전자원 국제기술회의 결과보고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1997.
-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2004.
-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생물다양성 관련 규범』,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2004.
-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 관리자 협의자료』,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2007.
- 박철호 외, 『식물유전자원학개론』, 도서출판 진솔, 2000.
-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통의약 관련 전통지식 현황조사 및 지재산 관련 연구』, 특허청, 2002.
- 송영식·이상정·황중환, 『지적소유권법』 (상)(하), 육법사, 2001.
- 오윤석, “국제법상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오윤석·조은기·백형진,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2004.
- 이두순 외, 『식물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 이재곤, “생물다양성의 국제적 보호와 지적재산권”,
『국제법평론』 통권 제15호, 국제법평론회, 2001.
- 이재곤, “자생식물유전자원의 국내적 보호와 국제법”,
『국제법학회논총』 제46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 2001.
- 이재곤·최승환·오윤석, 『농업유전자원 관련 국내외 규정 연구』, 농림부, 2006.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 자생식물유전자원 보호관리를 위한 국가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01.
- 한국종묘협회, 『외국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 한국종묘협회, 1987.
- Babara Lane Kagedan, The Biodiversity Conven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Ownership of Genetic Resources: International Development, IPPD Industry Canada, 1996.

Carlos M. Correa,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AO Background Study Paper, No.8, Commission on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1999.

Carlos M. Correa, "Op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Farmers' Rights at the National Level", Working Paper of South Center, 2000.

FAO Items 3.1 and 3.2 of the Provisional Agenda, Commission on Plant Genetic Resources,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Undertaking: Mandate, Context, Background and Proposed Process, Commission on Plant Genetic Resources, 1st Extraordinary Session, Rome, 7–11 Nov. 1994

Lara E. Ewens, "SEED WARS: BIO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QUEST FOR HIGH YIELD SEEDS", (http://www.bc.edu/bc_org/avp/law/lwsch/journals/bciclr/23_2/05_TXT.htm).

Regine Andersen, The History of Farmers' Rights: A Guide to Central Documents and Literature, Background Study 1, The Fridtjof Nansen Institute(FNI) Report 8, 2005.

Sean Murphy, "Biotechnology and International Law",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42, 2001.

WIPO, "Operational Principles for Intellectual Property Clause of Contractual Agreements Concern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2nd Sess. Geneva, Dec. 10–14, 2001.

WRI, IUCN, UNEP, Global Biodiversity Strategy, WRI, IUCN, UNEP, 1992.

참고자료 1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농림부공고 제2006-19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량안보의 기초가 되는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이용함으로써 농업생물다양성의 보존과 농업생명공학의 경쟁력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기타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유전물질”이라 함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의 물질을 말한다.
3. “유전자원”이라 함은 인류를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을 말한다.
4. “농업유전자원”이라 함은 농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식물·동물·미생물 및 곤충 등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전물질을 말한다.
5. “야생종”이라 함은 산, 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식물·동물·미생물 및 곤충종을 말한다.
6. “야생근연종”이라 함은 재배종 또는 사육종과 같은 속(屬)에 속하는 등 밀접하게 관련되지만 재배되거나 사육되지 않는 종을 말한다.
7. “현지 내 보존”이라 함은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보존과 자연환경에서의 종의 적절한 개체군의 유지 및 회복을 말한다. 사육종 또는 육성종의 경우,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환경에서의 보존·유지 및 회복을 말한다.
8. “현지 외 보존”이라 함은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그 천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9. “접근”이라 함은 유전자원과 그에 관한 정보에 대한 수집, 보존 및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0. “이용”이라 함은 농작물경작체제, 목야지, 산림 및 다른 관리되는 자원지역을 포함한 농업생산체제에 있는 농부와 타 생산업자에 의한 직접적인 이용과 육종가와 다른 연

구자에 의한 중간단계에서의 이용을 말한다.

11. “사전주의원칙” 이라 함은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관리·이용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가의 식량안보 등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더라도 예방적 차원의 적절한 잠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제2조에 의하여 정의된 “농업유전자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농업유전자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4조(기본원칙) 농업유전자원은 식량안보의 기초를 이루며 농업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을 위한 농업생물다양성의 확보와 이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하여도 필수적이며 사전주의원칙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는 우리 관할권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농업유전자원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동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농업유전자원의 충분한 확보와 이의 안전한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식량안보에 필수적인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세부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농업유전자원위원회 등의 구성과 기능

제6조(농업유전자원위원회) ①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가계획 등 중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조정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 하에 농업유전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이용에 관한 국가전략, 계획 및 이행프로그램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농업유전자원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기본계획과 중요정책의 수립과 이의 집행의 조정
3. 농업유전자원 분야의 인력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4. 농업유전자원에의 접근 및 분양에 관한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
5. 기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이용에 관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각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1급 공무원
 2.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농업유전자원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 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분야별 실무(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 ① 농업유전자원의 충분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관리·이용에 관한 연구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농업분야에서의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이들을 지원하며,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가의무이행에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책임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보존 및 관리

제8조(국내보존자원의 파악·등록 및 목록화)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야생종, 야생근연종 및 농가재배재래종 또는 사육재래종 및 도입종을 포함한 현지 내 보존 및 현지 외 보존 상태에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목

록화하여야 한다.

- ②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개발에 관련된 국가기관, 법인 또는 자연인은 제1항의 국가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농업유전자원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를 책임기관이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목록화와 데이터베이스 등록업무를 관장함에 있어 법령상 보호받는 유전자원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현지 내 보존자원의 보존·관리) ① 농림부장관은 현지 내 농업유전자원으로 파악된 개체군의 안전한 현지 내 보존을 위하여 동 자원에 대한 관리책임 또는 소유권을 갖는 관리기관, 법인 및 자연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현지 내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형공사 등 안전한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 외 보존자원의 보존·관리) ① 농림부장관은 제1조의 농업유전자원이 국가식량안보확보와 농업발전에 응하는 안전한 보존에 필요한 양과 질을 유지하고, 목표로 정한 농업유전자원의 수집지원, 확보된 수집물의 관리 및 갱신, 유전자은행·식물원·동물원 및 수목원 등의 현지 외 보존의 강화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시설을 확보하고 산·학·민·관협력체제와 국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국외유전자원의 확보) ① 농림부장관은 국가식량안보확보와 농업발전에 필수적인 농업유전자원을 국제농업연구기관 및 자원보유국 등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농림부장관은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 자생종을 파악하여 이를 재반입하도록 노력하고, 국제농업연구기관 및 자원보유국 등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한 보존에의 위협에 대한 대응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대한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함에 있어 사전주의원칙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예방적 차원의 적절한 감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련된 국가기관, 법인 또는 자연인은 인지한 위험을 농림부장관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해 또는 위난 시의 대응) 농림부장관은 자연재해, 내란, 전쟁 등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한 영향에서 원상회복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협조체제의 구축)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 법인 및 자연인 간의 필요한 정보교환 및 공유, 기술개발, 지원 및 교환, 위험의 고지 및 대응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화)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관리·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존·관리기관의 지정) 농림부장관은 제8조 내지 제15조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이 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에 따른 동기관의 구체적 임무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접근 및 이용

제17조(평가 및 활용증진) ① 농림부장관은 현지 내 및 현지 외 보존 농업유전자원의 특성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여 농업유전자원의 활용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에 따른 동기관의 구체적 임무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등급화) ① 농림부장관은 제8조에 의하여 등록된 농업유전자원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등급부여기관지정, 등급구분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농업유전자원 다양성 보존을 위한 시책)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생산에 있어 농업 유전자원의 다양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재래종과 자생종 등의 농가 등지에서의 보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접근, 분양 및 이용) ① 국내 현지 내 보존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에 접근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주의 농업유전자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에 현지 외 보존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농업유전자원의 등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접근, 분양 및 이용계약의 내용에 대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접근 또는 분양허가 시 필요한 경우 이익공유 등의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관계자는 외국 또는 타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의무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접근 및 분양허가의 취소 및 제한) ① 농림부장관은 법규위반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접근 및 분양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은 생태계예의 영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접근, 분양 및 이용에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 및 기술지원 등

제22조(재정 및 지원)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유전자원의 파악, 수집, 등록, 목록화, 특성조사, 등급부여 및 정보화,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국내 및 국제적 협력체제의 구축 및 이에 대한 연구

2. 자생종 및 재래종 농업유전자원을 포함한 국내·외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확보 및 이용에 대한 연구

3.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위험요소 파악 및 이에 대한 연구
4. 수집·등록된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확충
- ② 농림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농업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유전자원의 다양화를 도모하는 경우
 2. 농업유전자원의 지속적 관리·이용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
 3. 농촌지역 생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포상금 등) ① 농림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농업유전자원을 발견하거나 확보하는 경우 타법에 따른 지식재산권보호와는 별도로 포상금 또는 보상금 등 일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전문가육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 전문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교육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이행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등

제25조(벌칙) 제20조제1항에 위반하여 국내농업유전자원에 불법으로 접근하거나 국외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제1항에 위반하여 국내농업유전자원에 불법으로 접근하거나 국외반출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25조에 규정한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①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와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항과 절차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8조(몰수) 제20조에 위반하여 취득한 농업유전자원과 이 법의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는 농업유전자원은 이를 몰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조항의 삭제) ① 종자산업법 제165조는 삭제한다.

② 축산법 제8조의2는 삭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해당조항의 삭제에도 불구하고 동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하위 법령은 이 법의 대통령령 및 농림부령 등 관련 입법이 이루어질 때 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조항의 개정) ① 산림법 제67조 내지 제69조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을 “농업유전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7조에 의한 책임기관의 장”으로 변경한다.

②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로 변경한다. 제15조제2항의 “농림부령”을 “대통령령”으로 변경한다.

③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16조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한다.

④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에 단서, “다만, 농업유전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에 따른 농업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위한 경우는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⑤ 문화재보호법 제21조제1항에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천연기념물 중에서 농업유전자원의 경우 동 자원의 국외교류와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장의 반출허가 시에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⑥ 식물방역법 제7조제2항에 “4. 농업유전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의 도입의 경우”를 추가한다.

참고자료 2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176617. 2007년 5월 16일 제안, 2007년 5월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농업생명공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 물질을 말한다.
3. “유전자원”이란 인류를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4. “농업유전자원”이라 함은 종자·영양체(營養體)·화분(花粉)·세포주·유전자·잠종(蠶種)·종축(種畜)·정액(精液) 또는 버섯 종균(種菌) 등 농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 가. 야생종 :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 나. 재래종 : 한 지역에서 재배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 및 풍토에 적응된 종
 - 다. 육성·사육종 :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 라. 도입종 :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사육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5. “현지내보존”이란 농업유전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성·사육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지외보존”이란 농업유전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② 국민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유전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이용을 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수집·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유전자원의 분양 등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조사·등재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 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기관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야생종·재래종 등 농업유전자원
2. 품종개발 등 연구에 필요한 농업유전자원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농업유전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농업유전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유전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현황의 조사·수집, 농업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업유전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분석·평가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 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분양승인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농업유전자원의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험·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2. 보존되어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유전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농업유전자원 중에서 도입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유전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2.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농업유전자원 심의위원회 등

제13조(농업유전자원 심의위원회) ①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유전자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2. 농업유전자원 분야 연구·기술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정책

3.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분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

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농업유전자원 관련 전문가
-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림 분야 책임기관은 산림청장이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3. 농업유전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부장관과 산림청장이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책임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및 특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책임기관의 장이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3.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관리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유전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별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에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등

제18조(벌칙)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농업유전자원을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정한다.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8조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은 자
-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농림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